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 VIAC 사례를 중심으로

지엔항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박성호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Vietnam – focused on VIAC cases

Tran To Diem Hang^a, Sung-Ho Park^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05 June 2020, Revised 26 June 2020, Accepted 28 June 2020

Abstract

As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ncreases, the number and amount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ompani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Vietnam, due to differences in the arbitration system and norms due to the socialist state system, foreign companies lack confidence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not only discuss commercial disputes and settlements, but also to closely review and understand Vietnam's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s commercial disputes and analyzes the actual problems of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at arise through the arbitral award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Vietnam's representative arbitration agency, and precedent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Vietnamese courts. In the end, this study seeks to revitalize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so that each disputed party may quickly deal with the commercial disputes, and seeks a more smooth solution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future trade claim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ompanies.

Keywords: Arbitral Award,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Dispute, VIAC,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JEL Classifications:

^a First Autho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526@kmu.ac.kr

I. 서론

베트남은 1986년 쇄신을 뜻하는 ‘도이머이(Dổi mới)’와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세계경제질서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 아세안(ASEAN) 가입과 2001년 미국과의 FTA협정 발효 이후 2002년부터 매년 6~8%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2007년 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 경제에 더욱 급속히 편입되어가고 있다(Park, Jin-A 2016).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사를 극복하고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교역량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이하 ‘KITA’라 함) 통계에 따르면, 한국-베트남간 무역거래는 2010년에 수출 약 96.5억 달러, 수입 약 33.3억 달러에서 2019년 수출 약 481.7억 달러, 수입 약 102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 대상국이며 동시에 제7위 수입 대상국이다. 양국의 무역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무역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간 상사분쟁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베트남 국내에서의 상사분쟁 및 해결에 관한 논의는 물론, 베트남의 상사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 상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제정된 베트남 신중재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이하 “UNCITRAL 모델중재법”이라 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따른 베트남의 법률 제도는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을 베트남 국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정의 집행여부에 대해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로 인하여 분쟁발생시 베트남의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무역업체들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

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재사례를 통한 베트남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분석과 특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량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상사분쟁의 증가현실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상사분쟁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제 중재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베트남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이하 ‘VIAC’라고 함)의 실제 중재판정 사례와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관례를 통해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분쟁 당사자가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한국과 베트남 기업간의 무역 클레임에 있어서 상사중재를 통한 보다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및 베트남 상사분쟁 현황

1. 선행연구

1) 베트남 선행연구

Author	Year	Title	Contents
Banh Quoc Tuan	2014	Perfecting on recognition law and enforcement in Vietnam judgments and decisions of foreign courts	This study not only analyzed the international rules for arbitration awards with foreign factors also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current Vietnamese international law, and compared the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with foreign element in Vietnamese courts. On this basi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on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was emphasized, and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2015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Vietnamese Court	This study analyzes the Civil Procedure Act of Vietnam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4 and specifically lists civil cases in the international civil cases that include foreign elements belong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Vietnamese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Vietnam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general jurisdiction of Vietnamese courts , if lawsuit has been filed with the Vietnamese court the Vietnamese court will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case. If a litigant is filed in a foreign court and sentenced to a judgment which has not been filed to a Vietnamese court, the final judgment may be enforced in Vietnam if it complies with Vietnamese law. In this case, due to the general jurisdiction of the Vietnamese court, the international court's jurisdiction is not excluded.
Bui Thi Bich Lien	2013	Arbitration in Vietnam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ulation and the legal system in Vietnam for the Vietnam Arbitration Act. In addition, while presenting legal issues regarding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social norms of Vietnam,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hange were examined.
Do Van Dai & Mai Hong Quy	2006	Vietnam International Private Law : Civil Relations, Labor, Trade with Foreign Element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d the laws of various fields such as the precedent of the People's Court of Vietnam, the norms of the current law, and civil relations and labor. In particula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nts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trade claims between Vietnam and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While showing the concrete concept of domestic arbitration in Vietnam and arbitration with international elements, the legal issues in Vietnam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Do Van Dai	2010	Collection of Vietnam's judgments and decisions on commercial arbitration	This study has high practical value by presenting the opinions and evaluations of Vietnamese courts and arbitrators and authors' opinions while selecting and analyzing about 200 cases, judgments and arbitrations. Through these detailed judgments, legal issues related to arbitration were found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attempted by citing other similar judgments.
Le Hong Hanh	2013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Vietnames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arbitration in Vietnam before the arbitr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confirms the role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in accordance with Vietnamese legal rul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and the Korean Arbitration Center and the selection status of companies.

2) 한국 선행연구

Author	Year	Title	Contents
Kim Sang-C han	2009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R - Focusing on Major Asian Countries -	This study was the first to mention Vietnam's arbitration system, and compared and discussed the ADR systems of majo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onesia, Singapore, and Thailand, and comprehensively described the arbitration systems of major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this study, as the types of disputes have diversified since the 1990s, the need for a new method of dealing with commercial disputes has emerged, and Vietnam's consult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R by cour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this study does not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and lacks legal analysis.
Kim Sun-Jeong	2013	An Overview of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2011	This study reviews the legislative background, the nature and agreement of the arbitration law, and provides an assessment of future prospects for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but does not specifically examine the structure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arbitration cases under the arbitration rul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2010 Arbitration Act,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of 1985,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applicant to specify in the case of the absence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in modern standards, which is minimizing the court's involvement in the arbitration award, allowing for temporary relief, allowing foreign national arbitrators, and arbitration clause.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high political risks such as a short history of openness, slow revision experience, and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exist and should be overcome.
Shin Choong-II	2013	General Articles : A Comparison of New and Old Arbitration Laws in Vietnam	This study compares Vietnam's 2010 Prudential and Old Court methods, which were supplemented in terms of fairness and speed. In particular, the arbitrator's abolition of nationality requirements and the arbitral tribunal's temporary disposition authority were evaluated as a positive change in practical terms. In addition, the Prudential Court argued that foreign investors would have no difficulty choosing domestic

			<p>arbitration in Vietnam, but it was said that the Vietnamese court's attitude and cooperation with respect to arbitration was appropriate. However, the actual case has not been analyzed, and there is a pity to explain only the theoretical basis.</p>
Oh Hyon-Sok	2014	A Study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Vietnam	<p>This study reviewed the overall structure and major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2012 Arbitration Rules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In addition, the purpose and problems of the VIAC arbitration rules and prac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is study is more valuable in the practical aspect by analyzing from the perspective of Vietnam's superior arbitration system and arbitration procedure than the previous one. However, since there is no specific case analysis, there is a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in Vietnam.</p>
Kim Sun-Jeong	2014	Prospects for Commercial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Development in Vietnam	<p>Based on a report published in 2013 Vietnam's arbitration law also reviewed the arbitration system and evaluated its development prospect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choose a 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n Vietnam.</p>
Son Kyung-Han et al.	2015	A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Vietnam	<p>This study elaborated on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Act. In particular, cases of dismissing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tion award against a foreigner and cases of approval and execution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permitted and dismissed cases)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ward cancellation and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Vietnam were analyzed. This study is by far the most specific among the studies related to Vietnam, and through review of cases, it showed the status of Vietnam's arbitration. However, due to difficulties in access to Vietnamese precedents and linguistic limitations, there was a relatively insufficient point because the analysis focused on only the areas related to cancellation and approval of foreign arbitration.</p>
Park Jin-A	2016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Some Points of Attention thereto	<p>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cent trends in arbitration in Vietnam and presented a point of significance in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Eligibility for Arbitration, Governing Law, Arbitrators and Arbitration Agencies, Arbitration Procedures, and Arbitration Tribunal was reviewed, reflecting the overview of the Vietnam Arbitration System and the revisions of Vietnam's arbitration laws. In particular, it is characterized by explaining provisions related to ad hoc arbitration that are not found in Korean arbitration law.</p>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베트남 중재법 및 중재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규범 및 법령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상사중재법 및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문헌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점이다. 예컨대, 베트남 2010년 상사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참고하여 과거보다 국제화된 점, 베트남 중재법이 한국 중재법에는 없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제중재센터(VIAC)의 개관을 통하여 베트남이 중재제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둘째,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베트남 상사중재제도를 평가하여 의미있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베트남 중재제도와 중재문화의 변화, 국제화 등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베트남 교역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베트남 내에 중재판정취소,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 등에 대한 사례를 통해 유의 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발표된 Do Van Dai의 연구를 통하여 2010년 전까지 베트남 상사중재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중재법에 따른 사례들이라 최근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분쟁사건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는 중재원과 법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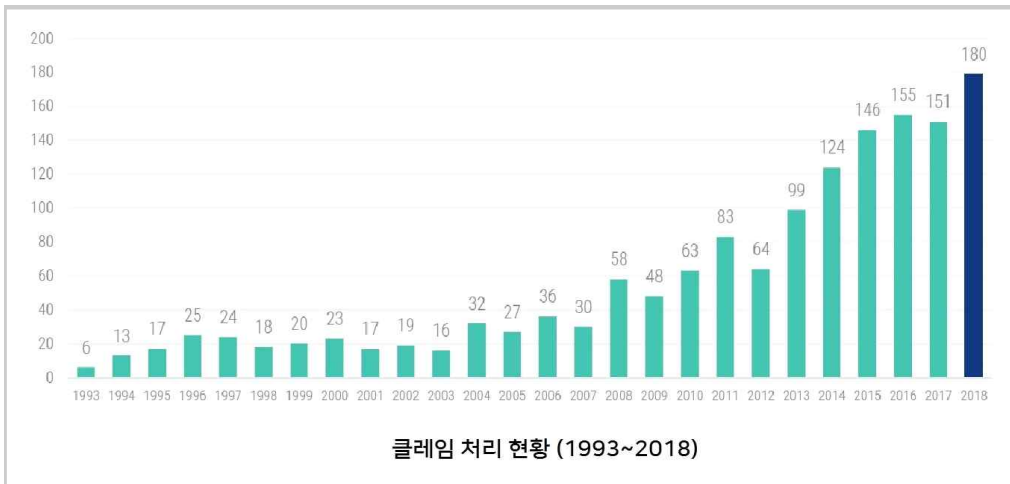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의미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상사중재에 관한 베트남어 및 타국어 자료가 희소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상사중재 판결 및 사례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연구들이 법문의 해석에 할애할 수밖에 없고,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한 베트남 법률문서와 논문의 2차 번역(영어, 일본어 등)을 통한 분석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베트남 상사분쟁 현황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된 공식적인 중재기관은 ①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② 하노이 상사중재센터(the Hanoi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HACA), ③ ASEAN 국제상사중재센터(the ASE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ACIAC), ④ 태평양 국제중재센터(the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PIAC), ⑤ 호치민시 상사중재센터(the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TRACENT), ⑥ 베트남 금융·은행 상사중재센터(the Vietnam Finance and Banking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VIFIBAR), ⑦ 금융거래 상사중재센터(the Finance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FCCA), ⑧ 켄터 상사중재센터(the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CCAC)로 총 8개이다(Hogan Lovells, 2013). 이 중 국제상사분쟁과 가장 관련 있는 기관은 1993년 총리령으로 설립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이다. VIAC는 1963년부터 '베트남 상공회의소'(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 CCI) 산하에 '외국 무역중재위원회'(1963년)와 '해사중재위원회'(1964년)가 설치되어 상사와 해사를 분리하여 분쟁을 해결하다가, 1993년 4월 양 위원회가 통합되면서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다(Oh Hyon-Sok, 2014). 베트남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된 기관으로서 VIAC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베트남의 전체 중재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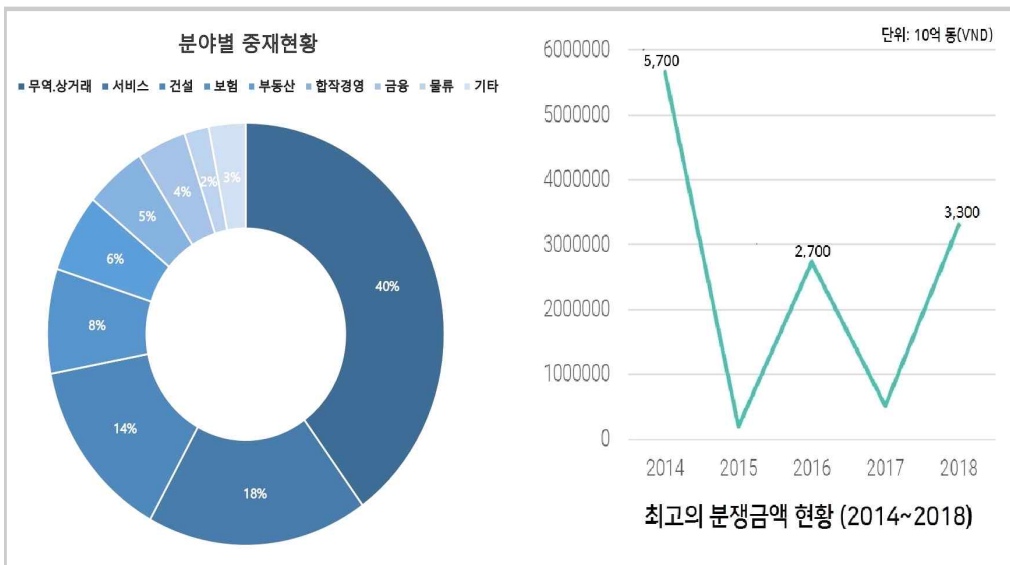
아래의 <Fig. 1.>에서 1993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재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클레임 처리 건수는 평균 30개 정도였으나, 2007년에 베트남이 WTO 가입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와 그에 따른 무역 규모의 증가에 따라 클레임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국내중재는 49%, 국제중재는 51%를 차지하고 있다(VIAC, 2018). 또한, 2018년에 VIAC에서 처리한 클레임은 180건으로 25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발표된 VIAC의 새로운 중재규칙에 복수계약(제6조), 중재절차의 병합(제15조), 신속절차(제37조)가 포함되면서 얻게 된 긍정적 결과라고 평가된다.

Fig. 1. Claim processing status (1993–2018) (Unit : Number of cases, Year)



Source: VIAC statistical data (<http://viac.vn/bao-cao-thuong-nien-c168.html>, 2019.2.19.), edited by author

Fig. 2. 2018 Arbitration Status and Maximum Dispute Amount



Source: VIAC statistical data, edited by author

1) 분야별 분쟁 현황

아래의 <Fig. 2.>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VIAC 분야별 및 분쟁금액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무역·상거래분야의 분쟁건수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과 물류(logistics) 관

련 분쟁이 2018년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액측면에서 2018년 내에만 중재건의 경제적 가치는 총 4천만 달러이며, 그 중에는 가장 큰 금액은 약 1.5천만 달러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 분야가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으며, 분쟁금액도 평균

Table 1. Vietnam's 10 Trade Claims (1993~2018)

(Unit : Number of cases)

Rank	Countries	Number of Cases	Rank	Countries	Number of Cases
1	China	150	6	Germany	34
2	Singapore	100	7	England	30
3	Korea	90	8	Thailand	20
4	USA	60	9	Japan	20
5	India	35	10	Russia	18

Source: VIAC statistical data, edited by author

건당 약 523억동(VND)까지 증가하였고 2018년은 전년에 비해 약 80% 증가하였다(VIAC, 2018).

2) 국가별 분쟁 현황

베트남에서 지난 25년간(1993~2018)의 국가별 무역클레임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보듯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중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고, 1991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외교·경제·무역 등 폭넓은 범위에서 교류가 증가하여 지난 25년간 양국 간의 무역은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은 싱가포르와 수교 45주년이 되었고 양국 간 경제·무역·투자 등에 대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 및 싱가포르와의 상사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3위에 있는 한국이다. 최근에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투자·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총 수출액에서 한국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고, 수입부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8.5%에서 2018년 21.4%로 급증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이며 동시에 제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KOTRA, 2019).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룬 국제분쟁 건수도 2017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터키 다음으로 베트남 기업과의 무역분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EBA, 2018). 이와 같이 양국간의 교역량 급증과 함께 무역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베트남 상사중재 현황의 특징

(1) 국제중재 건수 증가

VIAC에 접수되는 클레임 중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분쟁의 경우 60개 국가·지역의 기업이 VIAC를 통해 상사분쟁을 해결하였고, 2017년에 비해 국제중재는 28.5%에서 51%로 증가하였다(VIAC, 2018). 특히 베트남이 2010년 신(新)중재법을 도입한 후부터 국제분쟁 건수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국제무역 증가에 따라 VIAC가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재규칙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베트남 중재방식도 과거에 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VIAC는 국내·국제 중재를 처리하는 종합적인 중재기구가 되었다.

(2) 분쟁분야의 다양성·복잡성

분쟁분야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무역·상거래, 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건설, 보험, 부동산, 금융, 물류, 합작경영, 조선품공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VIAC의 자료를 보면, 무역계약 분쟁 건수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와 보험 분쟁 건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건설·부동산 등과 관련한 유형도 증가 추세이다. 또한 물류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물류관련 분쟁도 새

롭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분쟁유형에 부합하는 전문 중재인 확충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체제와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신속절차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에서 절차 및 법률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베트남의 분쟁 원인별 분석에 따르면 계약 조항 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비중이 크다. 이는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분쟁이라도 베트남의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재인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3) 베트남 중재제도의 국제화

2018년 VIAC 보고서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중재제도는 이용률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화 추세에 맞춰가고 있다(VIAC, 2018).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90% 도시와 성은 VIAC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VIAC에서 수리한 클레임 당사자들은 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4일에 발효됨으로써 베트남은 세계경제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한다. 이는 많은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중재시장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중 언어서비스로 외국 당사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VIAC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재인의 수는 총 161명, 그 중에 30%는 외국 중재인이며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베트남 중재인은 80% 이상이다(VIAC, <http://www.viac.vn/en/list-of-arbitrator&page=1>, 2020.06.26.).

넷째, 외국 중재인이 처리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당사자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중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로 다른 법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중재인

들이 같이 사건을 처리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재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Ⅲ. 베트남 중재 판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관련 사례

1) 중재언어 관련 사례

중재언어는 중재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중재인과 대리인의 선정 및 중재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재는 재판과 달리 중재절차 진행상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베트남 중재법과 규칙상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 진행상 사용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반면, 최소한 분쟁당사자 일방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중재언어를 정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분쟁당사자가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다.

중재언어에 대하여 베트남 법률은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듯이 '외국적 요소'의 개념은 베트남 2005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투자기업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Phú An사의 중재판정취소에 대한 요청 기각 사례

Phú An사와 ZEP사 간에는 2014년 1월 31일에 65/HĐHTĐT-PA.2014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중재기관은 베트남 VIAC의 호치민 지점으로 지정하고 중재규칙은 베트남 2010년 상사중재법을 따르도록 하였지만 중재절차에 사용하는 언어를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5년 8월 12일에 VIAC는 베트남 2010년 상사중재법의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베트남

어를 사용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중재재판에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② 중재판정문에 작성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③ 중재판정부는 ZEP사가 제출한 영어로 작성된 서류들을 인정하고 이들의 번역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유는 중재판정부에 참여한 모든 중재인들이 영어로 기재된 서류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여 중재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Phú An사는 ZEP사의 영어로 기재된 서류들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지 않는 채 절차를 진행하는 VIAC의 중재판정부가 불공평하다고 하여 호치민시인민법원에 VIAC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였다. 호치민시인민법원은 베트남 2010년 중재법의 제3·10·69·70·71·72조에 따라 Phú An사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VIAC의 중재판정을 승인하여 즉시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People's Court of Hochiminh City, 930/2015/QĐST-TTMM, 2015.09.10.).

(2) SUMMIT사의 중재판정취소에 대한 요청 승인 사례

베트남, Nghê An사와 싱가포르, SUMMIT사 간에 2004년 8월 2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재사항에는 '모든 중재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6일 심리판정에 SUMMIT사의 대리인이 불참석하며 VIAC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당일 중재판정이 SUMMIT사의 대리인이 없는 채 베트남어로 심리판정을 진행하였고 중재판정문도 베트남어로 작성하였다. 이는 베트남 2003년 상사중재법의 제49조를 위반하였다.

한편, SUMMIT사의 대리인이 사전에 5월 6일 심리판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판정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하였지만 VIAC 중재판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이 대리인은 2005년 5월 5일에 SUMMIT사 대리인의 권한을 자발적으로 거부하여 SUMMIT사에게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SUMMIT사는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였다. SUMMIT사는 VIAC 중재판정부에 심리판정을 연기하도록 요청하였지만 그대로 거절을 당하였다. 따라서

2005년 5월 6일에 열린 심리판정에 SUMMIT사 또는 SUMMIT사의 대리인이 불참하였던 것이 정당한 이유이며, 피신청인이 없는 채로 심리판정을 진행하는 것이 베트남 2003년 상사중재법의 제40조를 위반한다고 최고인민법원은 판단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상사중재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제56조 제2항, 제54호 제3·5항 및 제58조에 따라서 VIAC가 중재절차 및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중재판정을 기각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즉시 효력이 있다(Supreme People's Court of Vietnam, 04/2006/QĐPT, 2006.01.06.).

(3) 법원 판결에 관한 평가

2003년 베트남 중재법 제49조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있으나,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없으며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설립한 100% 외국투자법인 혹은 외국인과 베트남인의 합작법인은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국내법인이 당사자인 분쟁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쟁의 경우 그 중재언어는 자동적으로 베트남어가 된다. 이 경우 중재 관련 증거·자료를 베트남어로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문제와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어에 능숙한 중재인이나 대리인의 선정 문제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재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Shin Choong-II, 2013).

그러나 2010년 베트남 중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즉,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혹은 포함되지 않은 분쟁들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선택하도록 명시하였다(중재법 제10조). 이는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2조를 참조하여 규정되었는데 중재언어의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져서 실무적 판단을

혼란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재언어를 합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의 중재사항에 중재언어와 관련된 합의가 없음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2010년 베트남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심리판정 및 중재판정문에 적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일부분이 영어로 작성된 것이다. 베트남법상 소송절차에 따르면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반면, 중재절차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중재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언어라면 중재판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베트남 중재법과 규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절차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계약의 중재조항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심리판정에 피신청인의 결석으로 전체 과정은 베트남어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과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당시 2003년 중재법을 적용하였지만, 2010년 중재법을 적용하여 판단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0년 중재법 제68조 제2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다른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각국 중재법이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서양속(public policy)과 유사하며, 베트남 중재법만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중재합의 관련 사례

베트남 상사중재법상 중재합의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한다. 2003년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합의에서 분쟁 대상 또는 중재기관이 불명확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하는 보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0년 중재법에서 삭제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 형식 및 기관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제43조). 이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

하기 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Woolim사(한국) 및 Hanafood사(베트남) 간의 분쟁사례

Woolim사(한국)와 Hanafood사(베트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제7조 중재조항에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호치민시에 있는 국제중재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내용에 의하여 국제중재센터는 중재신청인의 신청서를 받고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 Hanafood사는 중재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 중재판정을 취소하도록 하노이 인민법원에 요청하였다.

하노이 인민법원에 따르면, 당시 “호치민시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Hanafood사의 요청서를 수리하였다. 당시 법원은 2003년 중재법에 의하여 호치민시 국제중재센터의 중재판정이 무효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People's Court of Hanoi City, 01/QTKT, 2004.07.14.).

(2) Hường Hải사 및 DACO사 간의 분쟁사례

Hường Hải사와 DACO사는 2014년 7월 11일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는 DACO사가 복합운송 방식으로 특정기체들을 이탈리아의 제노아 항구부터 Hường Hải사의 공장까지 운송하기로 기재되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동년 6월 27일에 DACO사는 Hường Hải사에게 “해상 및 항공화물 국제운송계약”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 초안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호치민시 경제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Hường Hải사는 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동년 7월 9일에 초안 수정본을 이메일로 DACO사에게 보냈다. 초안 수정본에는 “분쟁발생 시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하노이 국제상사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중

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있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패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양사는 Hưông Hải사의 초안 수정본으로 최종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7월 15일에 DACO사는 Hưông Hải사에게 최종 운송건적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는 구체적인 운송비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Hưông Hải사가 이 건적서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DACO사는 의무이행을 하였다. 2016년 2월 3일에 DACO사는 Hưông Hải사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VIAC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VIAC는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있는 중재합의에 의하여 DACO사의 중재신청을 수리했다.

VIAC에 의한 중재판정을 내린 후 2016년 3월 20일에 Hưông Hải사는 계약서에 있는 중재합의가 무효이고 중재기관도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노이 인민법원에 중재합의 무효 확인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인민법원은 2010년 중재법의 제18조상 ① 중재 적격성이 없는 분쟁에 관하여 중재합의를 한 경우, ② 권한없는 사람이 중재합의를 한 경우, ③ 민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중재합의를 한 경우, ④ 중재합의가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일방의 당사자가 기망 또는 강박으로 중재합의를 하였고 그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⑥ 중재합의가 실효된 경우나 이행불능된 경우 등과 같이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무효라는 규정과 대법원의 01/2014/NQ-HĐTP 결의의 제4조(중재합의의 실현불능사유)에서 ① 당사자 간에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한 중재기관이 폐쇄되었으나 다른 중재기관을 합의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② 합의한 중재인이 불가항력으로 사건을 수리할 수 없거나 중재기관이 대체중재인을 지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대체중재인을 선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③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였으나 분쟁발생 시 그 중재인이 선정을 거절하거나 중재기관이 중재인 선정을 거절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대체중재인을 선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④ 당사자들이 분쟁을 구체적인 중재기관에서 해결하는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이 아닌 다

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대체 중재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⑤ 물품 또는 서비스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중재판정부에 의한 분쟁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쌍방이 명확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무효인 경우에 속하지 아니하고, 2010년 중재법의 제43조에 의하여 DACO사가 VIAC를 중재기관으로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며, Hưông Hải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People's Court of Hanoi City, 09/2016/QĐ-PQTT, 2016.12.14.).

(3) 법원의 판결에 관한 평가

위에 제시된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재합의 무효에 대한 베트남 법은 큰 변화가 있다고 알 수 있다. 먼저 2003년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에서 분쟁 대상 또는 중재기관이 불명확하면 당사자 간의 다시 합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처럼 2010년 전까지는 중재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베트남 법원은 중재합의를 무효라고 판정하며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 중재법에는 중재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중재합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법 제43조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는데 중재형식 또는 중재기관이 불분명하면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중재신청인이 중재형식과 기관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이 규정과 추가로 무효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Hưông Hải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Hưông Hải사의 입장은 해당 계약서에서 “분쟁 발생 시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하노이 국제상사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하였다. 이는 만약 2003년 중재법으로 보면 맞는 주장이지만 현행 베트남법상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단, 중재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분쟁해결

시 합의가 없으면 신청인은 중재기관만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을 선정할 수 없다. 만약, 신청인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당사자 자유권한의 일부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준거법 관련 사례

중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준거법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재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법,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 등이 모두 다를 수 있다(Shin Choong-Il, 2013). 이 중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베트남 해상운송사 및 보험사 간의 분쟁사례

베트남 국내 해상운송사와 해상보험사간에 필리핀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재기관은 하노이에 본점이 있는 VIAC로 지정하고, 준거법은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 베트남 민법 및 보험·해상법이다. 베트남 보험·해상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계약서에 삽입하였다. 따라서 2012년 VIAC 중재규칙 제 22조 제2항, 2010년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4조(중재 준거법의 적용원칙) 제2항 및 2005년 베트남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베트남 법 및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판정에서 이 분쟁은 보험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베트남 법이 중재절차의 준거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선체보험을 1995년 ITC 보험약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보험회사가 운송사의 배상청구에 따른 보상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VIAC Arbitration Award, 11/12, 2012.11.01.).

(2) Bình Dương 주식회사(베트남) 및 금강기업(한국) 간의 분쟁사례

원고인 한국 금강기업은 2002년 4월 10일 피고인 베트남 Bình Dương 주식회사와 한국산 LED 스크린을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분쟁해결조항으로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33번지 Bà Triệu,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센터(VIAC)를 통하여 중재한다.”는 내용의 중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상품 품질의 문제로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으며, 단순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여 베트남 Bình Dương 주식회사는 계약한 대로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센터(VIAC)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VIAC는 계약할 당시에 33번지 Bà Triệu,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중재신청 시 VIAC는 새로운 주소인 9번지, Đào Duy Từ, 하노이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센터(VIAC)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해도 중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금강기업의 경우, 계약 시 중재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중재법에 따라 중재하기를 위하여 외국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2003년 베트남 중재법에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는 중재준거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을 결정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베트남 법을 중재준거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금강기업의 대리인은 심리판정 시 3명의 중재인 중 2명이 중재판단에 있어 공정성을 결핍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의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금강기업은 최고인민법원에 항변을 하여 VIAC 중재판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기업이 중재인 공정성의 결핍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할 수 없어서 최고인민법원은 2003년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 금강기업의 요청을 기각하였다(Supreme People's Court of Vietnam, 11/2005/KTPT, 2005.01.14.).

(3) 법원의 판결에 관한 평가

먼저 베트남 법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포함

된 분쟁이라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이라면 베트남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당사자인 해상운송사와 보험사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법적으로 베트남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판정에는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전에 합의했던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의 적용도 인정하였다. 사실상 본 건의 보험 대상은 해상운송회사가 한 필리핀회사로부터 임대한 선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대상에 대한 소유권은 제3자인 필리핀회사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본 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으며, 사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VIAC는 국내와 국제 사건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규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내의 기업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금강기업은 확실히 외국기업(한국)이므로 이 분쟁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준거법과 관련하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베트남 법을 선택하였다. 2003년 중재법상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베트남 법의 근본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베트남 법의 근본원칙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2010년 전까지는 모든 판정에 있어 달리 합의가 없는 한, 본 건과 같이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법을 중재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과 적용이 베트남 법의 근본원칙에 반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중재판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중재법에는 베트남 법의 근본원칙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준거법의 지정과 적용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10년 중재법은 준거법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강화했으며, 이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제28조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례가 현재 중재법으로 판단하면 중재판정부가 금강기업의 요청에 따라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판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4) 중재판정의 취소 관련 사례

베트남 상사중재법상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청구가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와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재판정취소 신청시한과 신청기관에 관한 사례

2016년 베트남 Hồng Sơn사와 외국투자기업인 PLANTATION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LANTATION사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대금지급분할을 Hồng Sơn사의 대리인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Hồng Sơn사는 PLANTATION사를 상대로 호치민시 VIAC에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2016년 9월 30일 VIAC는 PLANTATION사에 USD 83,545.78 및 USD 17,384.53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PLANTATION사는 호치민시 VIAC의 판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31일 Đống Đa군 인민법원에 이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Đống Đa군 인민법원은 PLANTATION사의 취소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하노이인민법원에 송부하였다. 중재판정취소의 신청서는 첫 번째 법적 수령기관에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날짜는 10월 30일이었어야 하지만 10월 30일은 공휴일이었다.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9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이 수령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최초 영업일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노이인민법원은 정상적으로 신청인인 PLANTATION사가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을 심사하였고, 2010년 상사중재법 제61조 제1항 (d)에 의하여 중재판정문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게 기입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2016년 9월 30일에 VIAC가 내린 판정을 취소

하도록 최종판결을 내렸다(People's Court of Hanoi City, 02/2017/QĐ-PQTT, 2017.03.27.).

(2) 오국법인 TITAN과 베트남 A회사간의 분쟁사례

베트남 A회사는 심리판정 시 중재판정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15일 아세아국제상사중재센터(ACIAC)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본건을 접수한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A회사가 제출한 취소신청의 사유가 "2010년 상사중재법 제68조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하여 A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People's Court of Hochiminh City, 1655/2015/KDTM-QĐST, 2015.11.15.).

(3) 법원의 판결에 관한 평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베트남법상 중재판정 취소 신청은 30일 내에 수리할 권한이 있는 시급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지만 신청인인 PLANTATION사가 이를 군(群)급 법원에 신청하였다. 하노이인민법원은 늦은 기한, 즉 2016년 11월 16일에 본 건과 관련한 서류를 기한초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베트남 국내에 있어 많은 법적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이러한 판정취소의 신청을 정상처리 및 승인한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베트남 내 취소결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중재판정의 34%가 취소되었다. 2010년 중재법이 발효된 이래 20건의 중재판정 취소가 신청되어 50% 이상이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의 높은 중재판정 취소를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한 기간 베트남 중재에 불신이 높았다.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2014년 7월 2일에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가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에서는 ① 중재합의 존중, ② 중재인구성·중재절차의 하자 제한 및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 제한 등 중재판정취소사유제한, ③ 중재 관할 법원의 명확화, ④ 임시중재인제도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베트남 국내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법원은 2010년 상사중재법 제68조를 근거로 판정취소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베트남 중재법상 법원은 분쟁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고려하는 데에 합법적 취소사유로 ①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②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법에 반하는 경우, ③ 해당 분쟁이 중재인의 권한을 넘어설 경우, ④ 중재기관이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기초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및 중재인이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기타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중재판정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즉 중재판정취소사유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베트남 법원은 취소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려면 본 내용을 참조하여 합법적인 사유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Nguyễn Thị Thuỳ Dung, 2017).

5)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관련 분쟁사례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된다. 국내중재판정은 법원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판정의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상사중재법 제66조).

한편,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승인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분쟁대상이 되는 재산이 베트남 내에 있는 경우 베트남 법원의 승인을 받아 중재판정 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승인·집행 판결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이 내린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가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판정을 집행할 수 없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70조는 외국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에서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베트남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이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승인 사례

2016년 Báo Minh(Quảng Trị)사는 Asia Global XQT사에 대한 약정손해배상을 묻는 중재를 싱가포르상사중재센터(SIAC)에 신청하여 중재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하노이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다. 본 건은 2017년 4월 무사히 승인을 받았으며 즉시 집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베트남 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건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8건이 승인되고 집행되었다. 또한, 6개건의 승인·집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중에는 2개건이 채무자가 베트남 내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집행할 수 없었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 사례

스위스회사(Sam Monia-AG)와 베트남회사(Hanexim) 간의 분쟁이 생겼으며 홍콩 중재판정부 통하여 중재를 진행하였다. Sam Monia-AG가 Hanexim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홍콩에서 받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베트남법원에 승인을 구하였다. 베트남법원은 홍콩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증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베트남정부의 시행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People's Court of Hochiminh City, 1238/QĐDC, 2005.06.17.).

이와 관련하여 Son Kyung-Han et al. (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소한 절차상의 결핍, 또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하위법령의 사소한 불일치의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3) 법원의 판결에 관한 평가

외국기업이 당사자인 무역·합작계약서에는 실제 해외중재기관의 표준조항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베트남 당사자와의 분쟁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현지 중재패널, 또는 중재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력 및 경험 부재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위에 언급한 듯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중재를 장려하는 상사중재법을 시행하고 있어 국제중재보다 국내중재의 강제집행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Lee Ga-Young, 2019).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법상 국내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과 달리 베트남법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외국중재판정은 별도의 승인·집행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원(VIAC)을 통하여 해결하면 중재절차는 1심만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점, 일방 당사자의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가지게 되는 공정성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중재비용도 저렴한 점 등의 장점을 갖고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에 목적이 있고 상대방의 자산이 베트남에 많은 경우에는 국제중재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2. 사례분석에 나타난 시사점

이상에서 베트남의 중재법과 중재규칙에서 관련된 중재사례를 살펴보았다. 중재법의 모든 이슈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자료를 통하여 베트남 상사중재의 실무적 내용과 이론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중재조항의 자율성 강화

위에 살펴본 사례들처럼 많은 분쟁이 무역계약의 체결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결핍된 이유로 발생된 것이다. 중재조항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은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고 시간과 경비의 경제성을 상실시킨다. 따라서 중재조항은 기본적 요건을 포함하여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

히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불완전한 중재조항은 때로는 중재의 무효가 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관정취소사유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율성, 중재조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VIAC가 제시한 표준중재조항 혹은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등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하거나 신속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기관의 중재인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모순된 판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의 부적절한 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중재병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중재절차가 신속할수록 중재의 확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의심이 커질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중재절차를 불만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합의가 무척 중요하며, 합의하는 과정에 중재 시 사용할 언어·준거법 등의 합의뿐만 아니라 사건병합·신속절차 등 사용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중재조항을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중재준거법의 명확성 강화

준거법은 중재에 적용되는 법으로 중재지, 중재인이나 중재기관 등과 더불어 중재합의의 주요요소의 하나이다. 준거법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즉, 당사자 간의 중재준거법 선택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추후에 일방 당사자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점이다. 이유는 중재판정부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 국내중재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국내중재에 있어서는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으로 적용하며, 중재절차는 베트남 중재기관의 규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에서는 각 국가의 법률이 서로 다르고 법체계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준거법 선택은 어렵고도 중요하다. 베트남 중재판정부가 준거법 선택권을 가질 경우, 베트남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베트남 법의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외국당사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에 관한 준거법과 방법을 합의하는 당시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국제협력 강화

중재판정은 중재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필요 시 국내·외 구분없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국가법원의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국내중재판정과 달리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각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강제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의 상사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베트남과 집중적으로 교역하는 국가와의 양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 승인·집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베트남에서 강제집행의 문제점 중 하나는 법적 개념의 모호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베트남 법령에 “베트남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개념이 많이 강조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법원의 판사들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베트남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시 채무자의 자산이 베트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의 지연이 되는 경향 등이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 전체적으로 개선을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모호한 법적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4) 베트남 법규 및 절차의 인지도 강화

외국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법원에서 상사분쟁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하고, 국제상거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중재에서도 중재합의 또는 중재판정이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 취소 혹은 승인·집행과 관련한 사건을 받을 때 먼저 베트남 민법·상법 등을 근거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베트남 법의 세부적 규정을 인지하지 않은 외국당사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향이 높다.

예컨대,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는 국내중재판정인지 외국중재판정인지에 따라서 신청의 수부기관이 상이하다. 즉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으로 판정이 송부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을 앞서서 베트남 법무부로 송부될 것을 요한다(Park Jin-A, 2016).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이 취소되거나 사건의 처리거절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중재로 분쟁해결의 결정 시 이러한 베트남의 법적 기본원칙을 알아두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욕협약과 UNCITRAL 모델 중재법 등 국제적 중재원칙을 반영하여 2010년 제정된 베트남 중재법 및 2017년에 개선된 VIAC의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중재규범은 전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규정들을 정비하고 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분석한 내용처럼 법률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국제상사 중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첫째, 중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피고가 중재항변을 하면 그때 각하 처리하는데 비해, 베트남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제소시 중재합의에 관한 항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 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중재규칙상 중재인의 권한 및 당사자들의 의무를 철저히 규정하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는 절차 및 시기와 자세한 진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진행절차가 불확실함으로써 중재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베트남 중재법은 국내중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 및 외국중재로 구분하고 있지만 '외국적 요소'에 대한 개념은 중재법에 규정하지 않고 베트남 민사소송법에서만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공식적 개념이 부족하여 베트남의 국제상사중재법 해석상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넷째,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준거법의 확정, 중재절차의 결정 및 중재판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베트남 법은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며 각 법률에서 모순적인 내용이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자치의 대표적인 합의의 자율성, 중재조항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 등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둘째, 중재준거법의 명확성이 강조된다. 베트남법상 중재판정부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 국내중재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합의 시 중재준거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인 또는 판사가 법적 용어 해석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는 중재준거법에 대한 규정과 용어를 더욱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의 상사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베트남과 집중적으로 교역하고 있는 국가와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각국의 관련 법령의 특징을 파악하고 합의하며

통일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외국당사자는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사자 간에 중재로 분쟁해결을 할 경우 베트남의 법적 기본원칙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당사자들이 쉽게 베트남 법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베트남 법률 및 규칙의 해석지침서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베트남 중재위원회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중재의사를 존중하며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쟁해결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len & Overy, *Publication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November 21, 2013. <http://www.allenoverl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 Banh Quoc Tuan (2015),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Vietnamese Court”, *Paper submitted to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 Banh Quoc Tuan (2014), *Perfecting on recognition law and enforcement in Vietnam judgments and decisions of foreign courts*, doctoral dissertatio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Bui Thi Bich Lien,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 Do Van Dai - Mai Hong Quy (2016), *Vietnam International Private Law-Civil Relations, Labor, Trade with Foreign Elements (Monographs)*, Ho Chi Minh: City National University Press.
- Do Van Dai - Tran Hoang Hai (2011), *Vietnam's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Do Van Dai (2010), *Collection of Vietnam's Judgments and Decisions on Commercial Arbitration*.
- Hoàng An (2010), “Thỏa thuận trọng tài nền tảng của phương thức giải quyết tranh chấp bằng trọng tài”, *Tạp chí dân chủ và pháp luật*, Số chuyên đề pháp luật về Trọng tài Thương mại, 35-46.
- Hogan Lovells (2013), “Arbitration in VietNam”. October, 2013. https://www.hoganlovells.com/files/Uploads/Documents/13.10_Hogan%20Lovells%20-%20Arbitration%20in%20Vietnam.pdf (2020.05.30.)
- KEBA (2018), *2016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Commentar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im, Snag-Chan (2009),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R - Focusing on Major Asian Countri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19(3), 67-91.
- Kim, Sun-Jeong (2013), “An Overview of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2011”,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3(4), 97-122.
- Kim, Sun-Jeong (2014), “Prospects for Commercial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Development in Vietnam”, *Issue Brief on Foreign Laws*, 8, 85-104.
- Kye, Kyoung-Moon, J. O. Kim, K. H. Lee, Nguyen Thi Thanh Xuan (2009), *Government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in Vietnam*,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Le, Hong Hanh,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Vietnamese law?”, June 1, 2013.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2020.05.20.).
- Le, Net, C. I. Shin (2018), “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 *Dong-A Law Review*, 79, 257-286.
- Lee, Ga-Young (2017), “Commercial Disputes in Vietnam, Choosing Arbitration rather than Litigation”, *World*

- Market-Asia-Oceania*, 2017.03.30.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8429> (2020.04.14.).
- Lee, Choong-Yeol (2015), "A Study on the Refusal of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Russia", *Korea Trade Review*, 40(1), 215-235.
- Nguyễn Hồng Khởi (2006), "Hai giải pháp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Hà Nội khi Việt Nam là thành viên của tổ chức thương mại thế giới", *Kỹ yếu hội nghị khoa học của Bộ Tư pháp: Tọa đàm về thực trạng sử dụng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ại Việt Nam, Hà Nội*.
- Nguyễn Minh Chí (2006), "Thực trạng và phương hướng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Việt Nam", *Hội thảo khoa học: Trọng tài, Bộ Tư pháp tổ chức*.
- Nguyễn Thị Thuỳ Dung (2017), "Một số bất cập trong thủ tục công nhận và cho thi hành bản án, quyết định của toà á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Toà kinh tế*, TAND TP.HCM, 2017.11.07., <https://thongtinphapluatdansu.edu.vn> (2019.04.14.).
- Oh, Hyon Sok (2014), "A Study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Vietnam",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9(4), 361-382.
- Oh, Won-Suk, H. S. Li (2014), "Law Applicable to the Substantial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 Focusing on China's Court Cases", *Korea Trade Review*, 39(3), 69-93.
- Park, Eun-Ok (2014), "A U.S. Case Study on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Trade Review*, 39(2), 71-90.
- Park, Jin-A (2016),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Some Points of Attention thereto", *Chonbuk Law Review*, 47, 415-457.
- Park, Sung-Ho (2016),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eoul: Uwon Books.
- Shin, Choong-Il (2013), "A Comparison of New and Old Arbitration Laws in Vietnam",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2(1), 343-372.
- Shin, Koon-Jae (2011), "A Comparative Study on Court Cases Concerning Cancellation of Arbitration Awards Caused by the Problems of Arbitrator between Korea and America", *Korea Trade Review*, 36(5), 1-22.
- Son, Kyung-Han, et al. (2015), *A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Vietnam*, Korean Ministry of Law.
- Trần Hữu Huỳnh (2003), "Pháp lệnh trọng tài thương mại những thử thách phía trước", *Nghiên cứu lập pháp*, 4, 61-66.
- VIAC (2018), *BÁO CÁO HOẠT ĐỘNG 2018*, <http://www.viac.vn/images/annual%20reports/Annual-report-2018.pdf> (2020.05.20.).
- ICC: www.iccwbo.org
- KCAB: www.kcab.org.kr
- Shim, Soo-Jin (2019), "Vietnam, the 2018 Settlement and the 2019 economic outlook", *Overseas Market News*, KOTRA Hanoi Branch,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 (2020.05.28.)
- Supreme People's Court of Vietnam*: <https://www.toaan.gov.vn>
- TRACENT: <https://tracent.com.vn/>
- UNCITRAL: www.uncitral.org
- VIAC: <http://viac.vn>
- Vietnam Government: <http://chinhphu.vn>
- Vietnam Parliament: <http://quochoi.vn>